

자기주식의 소각

Q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려고 합니다. 소각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자기주식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그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특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A **1.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모든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어떤 목적으로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그리고 특정목적에 위한 때에는 위의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정목적에 위한 때란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를 말합니다(동 제341조의2). 회사는 취득에 앞서 주주총회결의로 취득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회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회사(이익배당은 원칙으로 주주총회결의사항이지만 2011년 상법개정시 예외적으로 제449조의2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배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는 이사회결의로써 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11. 4. 개정 전까지 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취득할 길을 열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 개정 시에 그 한도에 제한을 가할 뿐 위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의 길을 넓혔습니다.

상장회사는 위 상법의 규정, 그 밖에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요건, 방법, 한도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약칭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상법과 크게 다른 점은 취득의 절차로서 어느 경우이든 이사회결의만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처분함에는 자본시장법시행령에 정하여진 요건,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동 제4항).

2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 방법으로는 자본감소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에 의한 소각(이를 이익소각이라 칭함),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상법 제343조).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고(상법 제438조), 주식병합의 절차(동 제440, 441조)를 소각에 뒤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면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만으로 족합니다. 2011. 4. 상법개정 전에는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것이 상법상 요구되었으나, 동 개정 시에 그런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 4. 5.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는 제165조의3(이익소각의 특례)으로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에 정관에 규정을 두고 있을 것이 동법상 요구되었으나, 동 개정 시에 제165조의3(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특례)에서 그런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김 교 창
 본회 상담역
 법무법인 정률
 고문변호사
 Tel. 2183-5601

3. 소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기주식은 회사가 그 주식을 어떤 경우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언제 취득하였거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기주식이 그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는 이익소각의 경우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주식에 한하고,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으로는 그렇게 의견이 나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상장회사가 소각할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므로 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2013. 4. 5.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는 제165조의3 제2항 후단에서 소각할 대상인 자기주식을 이사회결의 후 취득한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 시에 동 후단이 삭제되어 그 한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김성남
본회 상담역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Tel. 3787-6520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적용

Q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을 허용하기 위한 IASB의 기준서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A IASB가 2003년 종전의 IAS 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과 IAS 28(관계기업 투자)를 개정하기 전에는 지분법이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측정하기 위한 선택적 회계처리의 하나이었습니다. 그러나 IASB는 2003년 기준서 개정을 통하여 지분법을 선택적 회계처리에서 제외하였고 별도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에 대해 원가법 또는 IAS 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IASB는 일부 국가의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 적용을 강제하는 법규로 인해 기업이 재무제표작성을 위해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IASB는 별도재무제표의 회계처리에 지분법의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12월 IAS 27(별도재무제표)를 개정하기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계처리에 현행 원가법 또는 IFRS 9(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외에 지분법 회계처리를 추가함.
2.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서 배당금이 발생하였다면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야 함.

3. 위 개정 규정은 소급적용하여야 함.
4.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IFRS 10(연결재무제표) 문단 25는 잔존 투자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IAS 28(관계회사) 문단 25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기업이 계속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어 두 규정사이에 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공개초안은 IAS 28 문단 25를 개정하여 지분감소로 인해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IAS 문단 25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하였음.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Q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과 절세 포인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A** 우선 전년도와 비교하여 2013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사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함.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만 적용함
 - ② 교육비공제 확대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재비도 교육비공제에 포함됨
 - ③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됨(연 300만원 한도)
 - ④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변화 :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축소하고 대중교통비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확대함. 대중교통비 100만원 한도 추가 인정

한편 2013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절세 포인트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 ⇒ 주거의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도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형제 자매가 공제받지 않는다면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②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서 적용
 - ⇒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지며,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도 둘 중 공제효과가 큰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
 - ⇒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④ 부모나 자녀의 카드사용액도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에 포함
 -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므로(소득금액의 제한은 받음) 소득이



정 창 모
 본회 상담역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Tel. 397-6646

100만원 이하인 부모나 자녀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⑤ 동생, 처제, 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 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그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⑥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3년간 전액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군복무기간은 6년을 한도로 차감하여 계산) 미만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사건이며 필자가 속한 법인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이달의 e-자료실 (www.klca.or.kr)

이달의 자료실에 게재된 자료는 전월에 등록된 자료로서 본회 홈페이지(www.klca.or.kr) 각 목차별 첨부파일에 수록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파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전화 : 2087-7000).

제 목	담당파트	목차별자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정무위, 금융위)	회계제도	건의자료
K-IFRS 적용 세무조정 실무 설명회	회계제도	세미나자료
최근 IFRS 적용 개정내용 설명회	회계제도	세미나자료
주요 경제지표 현황(11월)	경제조사	통계자료
유가증권시장 12월결산 상장회사 배당결의 내용 안내 (2013. 12. 20 현재)	경제조사	통계자료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 "IV. 주식의 평가"」 발간	회계제도	회계세무자료
감리 지적사례(2013-1) 안내	회계제도	회계세무자료
ED 'Equity Method i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의견요청	회계제도	회계세무자료
MONTHLY 실무상담사례 Vol.10(2013년 11월호) 발간	회계제도	기타자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13사업연도 3분기실적	경제조사	보도자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13사업연도 3분기 유동비율	경제조사	보도자료
기업공시 실무 FAQ 발간	공시제도	기타자료
MONTHLY 실무상담사례 Vol.11(2013년 12월호) 발간	법제조사	기타자료
IFRS 재단 개정 공개초안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자본법'에 대한 의견 요청	회계제도	발송공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안내	공시제도	발송공문
「회원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활용 안내	공시제도	발송공문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개정 및 활용 안내	공시제도	발송공문